

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553,450,310	76,603,509
일반회계	2,194,582,285	65,837,469
특별회계	358,868,025	10,766,041
공기업특별회계	234,429,690	7,032,89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4,526,133	3,435,784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9,903,557	3,597,107
기타특별회계	124,438,335	3,733,150
교통사업 특별회계	58,647,446	1,759,423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90,358	62,711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3,194,784	95,844
대지보상 특별회계	2,143,439	64,303
기반시설 특별회계	103	3
수질개선 특별회계	30,900,737	927,022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6,844,608	205,338
균형발전특별회계	20,616,860	618,50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 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8,867,609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8,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